##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93

발의연월일: 2021. 8. 3.

발 의 자:박 정·소병훈·송옥주

양기대・어기구・오영환

유정주 • 윤후덕 • 이상헌

이형석 · 임오경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소장의 문화재·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사례로,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했음. 이에 따라 국가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 도입의필요성이 제기됨.

문화유산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하여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원고, 문화재, 역사적 문서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물납 적용대상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미술품은 상속과정에서 처분 및 유출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함. 국내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미술품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처분·유출된 문화재·미술품 확보는 많은 국가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확보 자체가 어렵기도 함.

이에 문화재·미술품을 물납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재·미술품의 가치 및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공공박 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임(안 제7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특례)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물납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 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납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